



한국응용언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일: 2019년 9월 20일

제1장 총칙

- 1조 본 위원회는 한국응용언어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2조 본 위원회는 한국응용언어학회 회칙 17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 1조 편집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외부 위촉직 심사위원을 둔다.
- 2조 편집출판 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 3조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임편집위원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4조 편집 이사와 위촉직 심사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박사 학위 이상의 회원이나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과 편집출판 부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5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3장 기능

- 1조 편집 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원고 논문 심사 기준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 2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3조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 1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편집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1조 내용의 적절성: 응용언어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2조 내용의 창의성: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하며, 국내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가 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3조 형식의 적절성: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조 구성 및 전개 방식의 적절성: 응용언어학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한 논문이어야 한다.

5조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연구 문제의 제기, 연구의 설계 및 결과 분석의 과정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적절한 논문이어야 한다. 특히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권장하며, 모든 논문의 저자들은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조 기타: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뒤일지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또한 저자들로부터 논문과 관련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과 같은 모든 저작권 권한행사를 위임 받는다.

제6장 논문 심사절차

1조 접수: 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을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논문 주제가 통상적인 응용언어학 영역을 벗어나거나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동일한 권에 단독 동일저자의 논문은 최대 2편까지 게재 가능하며, 직전 호에 연이어 그 다음 호에 단독 동일저자의 논문이 연속으로 게재될 수 없다.

발행예정일:

(1) 봄호: 3월 31일

- (2) 여름호: 6월 30일
- (3) 가을호: 9월 30일
- (4) 겨울호: 12월 31일

2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을 전공별로 정리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의뢰서"를 투고 논문과 함께 심사 위원에게 보낸다. 이 때 각 투고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해서 보낸다. 세부 분야가 동일한 논문이 2편 이상 투고된 경우에는 한 심사 위원이 2편 이상을 심사할 수 있다. 재심 이상의 논문 심사의 경우 초심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아울러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3조 심사: 각 심사 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 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4조 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요구사항을 “심사 결과 보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수정 제안을 표시한 투고 논문 원안도 함께 편집 위원장에게 보낸다.

5조 편집위원 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심사 위원의 판정이 당해호 게재(수정 후 게재 포함)와 당해호 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조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당해호 게재가 불가하며 바로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바로 다음 호에 재투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최종 ‘게재 불가’ 처리한다. 한편, 재투고된 논문은 논문 심사절차를 다시 밟게 되며, 재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될 시 그 논문은 재차 투고할 수 없다.

7조 편집위원회는 발행예정일에 학회지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한다.